

#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2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5. 28.

제 출 자 : 송파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(2026년 12월 31일) 도래로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및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8조)
- 2026년 12월 31일 → 2031년 12월 31일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(구체적 내용 : 별첨)
- 1)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
  - 2) 「건축법」 제87조의3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사항: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, 여성보육과(성별영향분석평가), 기획예산과(규제사전심사)
- 라. 기 타
- 1) 개정문안, 신·구조문 대비표,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첨
  - 2) 입법예고: 2026. 4. 23. ~ 5. 13. (20일간)

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          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**□ 지방재정법**

**제9조(회계의 구분)**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-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**□ 건축법**

**제87조의3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)**

-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